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 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과 이사회의 공무원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2인 이내로 변경코자 함.

□ 주요골자

- 임원중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변경함(안 제9조)
 - 가. 시의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국장을 비상임 이사로 한다.
 - 나. 당연직 감사를 기획담당관으로 함.
- 공단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4조)
 - 가. 임용당시 결격사유 해당시 당연 퇴직한다.
 - 나. 퇴직된 임원의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이 존속된다.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관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 임원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변경(안 제9조),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내용(안 제14조)이 제65회 시의회 정례회의시 개정된 동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따르고 있어 법령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1998. 4. 25 조례 제204호]

<전문개정 1999. 5.15. 조례 제259호/ 2002.11.25. 조례 제466호>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1. 목적 |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 2. 명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 5.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2002. 11. 25 개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나. 내용타당성

- 정관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9조(임원) 제3항중에 시의 국장급이 맡고있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4항중 당연직 감사는 “기획실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제65회 시의회 정례회시 개정된 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관련 임원조항을 조정하였으며,

- 정관 안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결격내용은 제 66회 시의회 임시회시 개정된 바 있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조례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호”와 같이 개정하고, 또한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도 동 시설관리공단조례 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신설하는 등 그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음.